V 결론

자동차보험 자유화는 1990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당시는 자유화의 초기단계로 자동차보험 요율요소에 범위요율을 적용하면서 매년 자유화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가격자유화에 치중하였다. 예를 들면, 가입경력요율, 할인할증요율 및 기본보험료의 범위요율제도가 시행되었었다.

본격적으로 자동차보험 자유화가 시작된 시기는 2000년부터이며, 가격자유화를 시발로 상품자유화까지 시행되었다. 2000년 초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에 해당되는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자유화를 실시하였다. 2001년에는 진입규제 완화로 전화로 영업하는 직판전문회사가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보험 가격 및 상품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자동차보험 자유화는 정부에서 자동차보험 요율과 상품을 통제하던 시기에 수동적 경쟁을 하던 손해보험회사를 경쟁의 무대에 세워서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요율산출능력이 제고되었고, 자유화 초기에 다양한 상품이 개발, 공급되었던 예를 볼 때 이러한 정부의 정책목표는 일정부분 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자유화의 목표가 일정부분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자동차보험을 단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였던 경험, 자동차보험이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보험인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동차보험 가격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손해율이 증가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고 보험소비자는 이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금융당국은 갈등해소차원에서 보험금 누수 방지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료 인상 최소화 정책을 시행하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는 원인이 자동차보험은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므로 보험료 조정은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 자동차 보험료 결정과정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동차보험이 일반보험 상품처럼 운영되도록 되어있는 현 보험제도 사이의 괴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두 제도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원가지수 공표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원가지수 공표제는 현 자동차보험 자유화의 틀

을 유지하되, 자배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화된 책임보험(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의 원가를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의 가격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자동차보험 가격 결정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원가지수 공표제'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가격 결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일부 해소되어 자동차보험 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일부 완화되고, 이를 통한 자동차보험의 실질적 자유화가 달성되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자동차보험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